

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의 수출유망 전략품목 및 민간 투자유망 국산화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「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글로벌전략기술개발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2월 28일

중소기업청장

1. 사업개요

- “글로벌전략기술개발”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(First mover)를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‘지정공모 방식’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
 - 글로벌중소기업육성과제 :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수출유망 전략품목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 지원
 - 투자연계 과제 :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
- '14년 지원규모 : 598억원
(글로벌 중소기업 357억원(신규171억원), 투자연계 241억원(신규126억원))

2. 지원분야

- 수출유망 160개 전략품목 및 미래유망·국산화 194개 전략품목의 기술제안요청서(RFP : Request for proposal)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지원

☞ 기술제안요청서(RFP)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,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

3. 신청자격

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으로서, 다음의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(신청자격은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)

○ 글로벌강소기업육성 과제 :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

① 전년도 직수출실적 3백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가)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

나) 벤처기업,

다)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

라)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.5% 이상인 기업

② 최근 3년('11~'13)간 직수출실적 평균 3백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가)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

나) 벤처기업,

다)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

라)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.5% 이상인 기업

③ 중소기업청 '글로벌 강소기업'으로 선정된 기업

④ 중소기업청 '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'에 선정된 기업

* 다만,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"World Class R&D 지원사업" 수행중인 기업은 과제종료이후 신청가능

○ 투자연계 과제 :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

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② 벤처기업,

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

④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2.5% 이상인 기업

□ 신청자격의 검토·확인

- 중소기업 경영현황표(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)에 온라인 입력)를 토대로 서면 검토(전문기관)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(관리기관)
- * (관리기관)각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- **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<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>

| 구 분 | 확인 근거 (증빙서류)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설립년월일 (창업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인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 ▪ 법인사업자 : 법인 등기부 등본 * 등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**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,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|
| 수출실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▪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|
|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술개발투자비는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 및 기타원가명세서 등의 해당계정과목을 확인 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** <붙임2> 기술개발투자액 확인서 작성하여 현장조사시 제출 |
| 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|
|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신용정보 등 확인 * 참여횟수조회 :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>> 온라인과제관리 >> 과제참여횟수조회(졸업제관련) ** 참여제한확인 :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>> 온라인과제관리 >> 과제신청 >> 신청안내 >> 참여제한 확인 |

- 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

- ※ 지원(후보)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- 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4. 지원내용 및 한도

- 정부출연금 :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%이내에서 최대 2년, 10억원 (연간 5억원 이내)까지 지원
-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)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- 2014년 3월 10일(월) ~ 3월 31일(월)

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 ~ 3일전에 온라인신청완료 요망 (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)
※ 전화응대는 3월 31일(월) 18시까지 가능

○ 사업설명회 개최

- 일시 및 장소 : 3.13(목) 14:00, VR빌딩 B1 블루룸(서초구 서초동 1706-5)
- 내용 : 사업소개, 온라인신청방법,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및 투자심사안내 등
- 사전신청 : 3.10(월) 18:00까지 사전신청요망
 - * 신청서 작성하여 md@kvca.or.kr 또는 FAX(02-2156-2140) 로 송부
 - * 문의처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 (02-2156-2131~35)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- ※ <http://www.smt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온라인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- ※ 신청서류 : www.smttech.go.kr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- ※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 필요

○ 온라인 신청절차

| 1단계 | 2단계 | 3단계 | 4단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회원가입 | 온라인 직접입력 |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| 접수 확인 및 완료 |
| | 사업계획서 [별지 제1-①] Part I | 사업계획서 [별지 제1-①] Part II | |

< 온라인 신청 단계별 접수요령 >

- ① 1단계 : 회원가입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- ② 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- 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 - [별지 제1-② ~ ④호]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
- 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**접수중 출력**(신청·접수 완료 확인)
 - **접수 완료 후** 다시 수정할 경우 “제출하기”를 클릭한 후 “제출완료” 확인 필요

○ 신청시 구비서류

| 연번 | 서식 명 | 제출방법 | 해당여부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① |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| *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| 공 통 |
| ② |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| | |
| ③ |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| | |
| ④ |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| | |
| ⑤ | 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 *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작성 | *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 업로드 | 해당시 |
| ⑥ | 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 *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작성 | | |
| ⑦ | 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 | | |
| ⑧ |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| | |

*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'14. 6. 1로 기재
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

6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공통사항

- **현장조사(4월)** : 신청기업(주관기관)의 신청자격, 기술개발능력, 연구개발 인프라, 사업화능력, 과제 중복성,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
- **대면평가(5월)** :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, 사업계획의 창의성·도전성, 기술성, 사업성 및 과제 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

□ 각 과제별 평가·선정절차

<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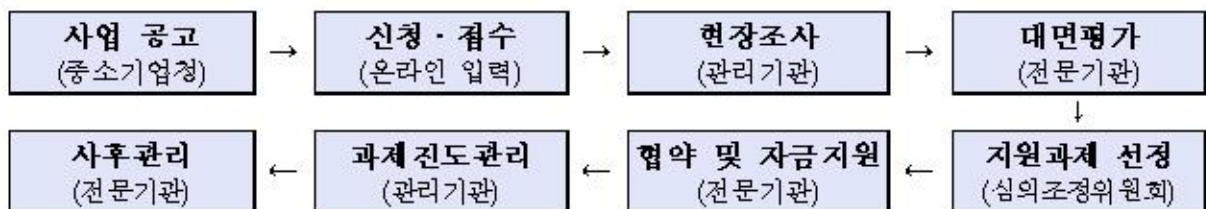
- **지원과제 선정(6월)** : 대면평가결과,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'심의조정위원회'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※ 종합평점 = 대면평가 점수 + 우대배점 - 감점

·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

- **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(6월)** :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

<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추진절차>



* (관리기관) 각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
<투자연계 과제>

- **지원과제 선정 (6월)** : 대면평가결과,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'심의조정위원회'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과제 확정

※ 종합평점 = 대면평가 점수

- 투자연계과제는 우대배점 및 감점 적용하지 않음

- '지원과제'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민간 투자유치 자격을 부여

- **민간 투자심사(통합 사업공고일 ~ '14.10.31)**

- 심의조정위원회에서 '지원과제'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'14.10.31일까지 민간 투자유치 실시

- *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

-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

| 투자방식 | 투자금액 | 개 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신주발행 (보통주, 우선주) | 정부출연금의 50%이상 |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*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기술개발기간 이후 상환권 청구 가능 |
| 전환사채 (CB : Convertible Bond) | 정부출연금의 100%이상 |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|

- 투자기관 및 조건 :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

- * 통합 사업공고일('14.1.3)이후 투자기간 만료 전에 체결된 투자에 한해 인정

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(창업투자조합 포함),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(신기술투자조합 포함), ③ 한국벤처투자조합, ④ 한국산업은행, ⑤ 중소기업은행, ⑥ 은행, ⑦ 사모투자전문회사, ⑧기술보증기금 ⑨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

- 투자연계 지원예산 집행기준 : 지원예산 소진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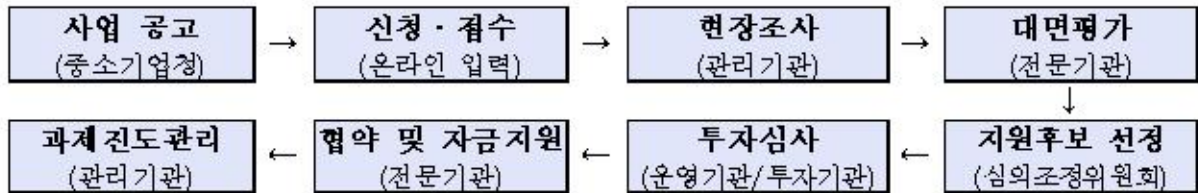
- 투자심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예산 소진시, 투자심사 및 사업 마감

- 투자완료 순으로 지원, 투자완료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

- * 과제신청 완료 이후 대면평가 이전이라 하더라도,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'사전 투자심사' 가능 : 운영기관(한국벤처캐피탈협회) 홈페이지(www.mdinvest.or.kr)을 통해 신청

- **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** : 투자심사기간 만료일인 '14.10.31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확인후 전문기관에서 협약체결 안내

< 투자연계과제 추진절차 >



* (관리기관) 각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(운영기관)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7. 기술료 납부

-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“성공” 으로 판정될 경우,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8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·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 할 수 있음

-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 -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 -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② 기 개발/기 지원 여부
 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 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 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-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(계량화·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

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* 의무사항 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④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 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주관기관,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
㉞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
㉟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- * 채무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- **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
㊱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

- * 단,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
㊲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- * 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

-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⑥ 과제 참여율

-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%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.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
-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 - * 단,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

9. 기타 공지사항

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

| 사업명 | 내역사업명 | 세부과제명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| 글로벌전략기술개발 |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|
| | | 투자연계과제 |

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(공동개발기관,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)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

| 수행중 과제수 | 신규 신청가능 여부 |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2개 | 불가 | 불가 |
| 1개 | 가능 | 1개 |
| 0개 | 가능 | 2개 |

* 단,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, 'R&D 기획역량 제고', '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' 및 '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'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

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

- '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참여기업(산학연사업에 해당)의 자격으로 선정되어,
 -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,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협약한 경우 사업에 참여 불가
 - * 연도별 “저변확대” 및 “선택집중” 사업 현황 : <붙임 1> 참조

- '05년 이후 '선택집중'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'저변확대' 사업에 참여 불가



○ 그 외 적용기준

- 제품·공정개선사업은 '저변확대'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(단, '저변확대' 사업 총 3회 협약기업의 경우 참여 불가)
- '05년부터 '저변확대'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'선택집중'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
- '산학연 협력기술개발'사업 참여기업은 '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

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○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
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·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○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해서는 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위원회」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, 활용성,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

-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·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·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·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

※ 연구시설·장비라 함은 연구·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, 시험, 계측, 기계가공, 제조, 전처리, 영상, 교정, 데이터 처리,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

※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·장비는 연구시설·장비로 산정불가하며,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

- ⑥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
- ⑦ 디자인과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
 -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기술제안요청서(RFP)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, 연구활동비 중 '디자인 정보조사·개발 및 컨설팅 비용'을 계상할 것을 권고함
-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을 적용함

10. 문의처

사업안내

| 담당기관(부서) | | 문의사항 | 전 화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총괄 | 중소기업청(기술개발과) | 시행계획 공고 | 1661-1367(내선 1번) |
| 전문기관 |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(중소기업 R&D고객센터) | 신청·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 | 1661-1367(내선 1번) 042-715-2335 |
| 운영기관 (투자연계과제만 해당) | 한국벤처캐피탈협회 (R&D사업화투자협의회) | 투자심사, 투자연계 등 | 02-2156-2131~36 |

지방중소기업청(관리기관)

| 기관명 | 전화 | 주소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지방중소기업청 | 02-2110-6358 ~68 |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|
| 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 | 051-601-5137/48 |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|
| 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 | 053-659-2287 ~89 |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|
| 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| 062-360-9151/58 ~59 | 광주광역시 서구 경일로 17번길 12 |
| 경기지방중소기업청 | 031-201-6972/75/77 |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|
| 인천지방중소기업청 | 032-450-1152 ~6 |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|
| 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 | 042-865-6158/56/35/36/46 |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|
| 강원지방중소기업청 | 033-260-1631 ~33/36 |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|
| 충북지방중소기업청 | 043-230-5331 ~34/48 |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|
| 전북지방중소기업청 | 063-210-6441/43/51 ~53 |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|
| 경남지방중소기업청 | 055-268-2551/54/55/58 |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|
| 제주특별자치도(기업지원과) | 064-710-2637 |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|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- R&D사업화투자협의회(투자연계만 해당) : <http://www.rndinvest.or.kr>

연도별 “저변확대” 및 “선택집중” 사업 현황

| 연도 | “저변확대” 사업명 | “선택집중” 사업명 |
|------|---|--|
| 2005 |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중소기업개발과제) |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생산환경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컨소시엄개발과제) |
| 2006 |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중소기업개발과제) |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(컨소시엄개발과제) |
| 2007 |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슈퍼컴퓨터활용과제) |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첨단장비활용과제) |
| 2008 |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일반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슈퍼컴퓨터활용과제) |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전략과제)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일반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(첨단장비활용과제) |
| 2009 |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실용과제)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(일반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실용과제) 중소기업 이 전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슈퍼컴퓨터활용과제) |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)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선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협력펀드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|

| | | |
|------|--|---|
| |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| 중소기업이 전기술개발사업(선도 과제)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(선도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연계형과제)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첨 단장비활용과제)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|
| 2010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창업·실용과제),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서비스유망과제)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산업보안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슈퍼컴퓨터활용과제)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(실용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미래선도과제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글로벌투자과제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신기술사업화연계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협력펀드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중소기업이 전기술개발사업(지정공모과제)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선도과제)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(연계형과제)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첨 단장비활용과제) |
| 2011 |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서비스혁신과제)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(산업보안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(해외수요처 (기업제안과제)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창업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성장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(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미래선도과제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(R&D기획지원연계과제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농공상융합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해외수요처 (글로벌협력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연계형과제)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연구기관제안과제)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|
| 2012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서비스연구개발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(해외수요처 (기업제안과제) 중소기업이 전기술개발(기업제안과제) 중소기업이 전기술개발(해외기술이전과제)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(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투자연계과제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미래선도과제)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(R&D기획지원연계과제)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|

| | | |
|------|---|---|
| |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보급확산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농공상용합형과제)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창업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성장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재도약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건강관리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웹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1인창조기업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투자연계멘토링과제)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첫걸음과제) |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(글로벌협력과제)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산연협력과제)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(출연연과제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신규설치)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(업그레이드)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산연협력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센터연계형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사업화연계과제) 융복합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연구기관제안과제)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(출연연과제)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수요조사과제)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(기업제안과제) |
| 2013 |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|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|

※ '13년부터 사업단위로 '저변확대', '선택집중'을 구분하여 운영

<붙임 2>

| 기술개발투자액 확인서 | | | | | | |
|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업 체 명 | | | | ② 사업자등록번호 | | |
| ③ 대표자명 | | | | | | |
| ④ 연구개발비 투자금액 및 비율 (단위: 억원) | | | | | | |
| 재무상태표 (개발비 총 증가액) (A) | 손익계산서 (연구비, 경상개발비 또는 (경상) 연구개발비) (B) | 제조원가명세서 (연구비, 경상개발비 또는 (경상) 연구개발비) (C) | 기타원가명세서 (연구비, 경상개발비 또는 (경상) 연구개발비) (D) | 연구개발비합계 (E=A+B+C+D) | 매출액 (F) |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(=E/F×100) |
| | | | | | | |
| <p>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책임은 당해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14년 월 일</p> <p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margin-top: 20px;"> 기업명 : 대표자 : (직인)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.2em;">중소기업청장 귀하</p> | | | | | | |

※ 작성시 고려사항

- 기술개발투자비(연구개발비)은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 및 기타 원가명세서의 해당계정과목에 계산된 금액

| 계무계표 | 계정과목 |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대차대조표 | 무형자산의 개발비 |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(=당기말 개발비-전기말 개발비+개발비상각비) |
| 손익계산서 |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, 경상개발비 또는 (경상)연구개발비 |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|
| 제조원가명세서 | 제조경비의 연구비, 경상개발비 또는 (경상)연구개발비 | 당해 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|
| 기타원가명세서 | 연구비, 경상개발비 또는 (경상)연구개발비 | 당해 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 |